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76		접수년월일	2004. 4. 29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신반포2지구(아) 101-507		
	성명	허명화의 4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한봉수 의원 (한나라당, 서초구 제3선거구, 보건사회위원회)			
건명	서울특별시재산증자치구이관대상재산조속이관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요지

- 1988.5.1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분구됨에 따라 관령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중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 이관요청 하였으나 미이관된 재산에 대하여 조속이관을 요구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 청사부지 무상양여요청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른 공공용지시설 부지 및 200㎡미만 잡종재산, 도로폭 20m 미만도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437필지, 동사무소 및 서초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점유 체비지 20필지 등을 검토후 자치구에 무상이관되어야 함에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관요청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미이관된 실정임.
- 이에 청원인들은 서울시로부터 조속히 자치구에 이관하여야 할 재산은 이관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강구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 시상부문별 개별조례를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2003. 6. 16)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사랑시민상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에 여성부문을 신설하여 9개 부문으로 함(안 제2조제1항)

※ 현행 8개부문 : 봉사·문화·환경·복지·어린이 및 청소년·교통·건축·토목부문

나. 복지부문에 추가되는 장애극복자 분야는 장애인주간(4월 20일~4월 26일)에, 신설되는 여성부문은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에 각각 시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문화부문의 대상 1명을 삭제하여 본상을 13명에서 14명으로 하고, 복지부문에 복지자원봉사·후원자·종사자 분야 외에 장애극복자 분야를 추가하여 시상인원을 6명(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 증원하며,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은 양성평등·사회참여·경제활동·보육·건강가정 등 5개 분야로 하고, 여성부문의 시상인원을 6명(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함(안 별표 1)

라. 문화부문의 본상 시상금을 7,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하고,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금을 대상 10,000천원, 본상 5,000천원, 장려상 3,000천원으로 함(안 별표 2).